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공포, 2023. 12. 31. 시행)됨에 따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생산목표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설정(안 제3조)

돼지 사육두수 2만두 이상 사업자,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1천톤/년 이상 사업자를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

### 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안 제4조, 별표 1)

5년 주기로 규정한 장기 생산목표율을 반영하고,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다. 과징금 감면 사유(안 제6조)

의무생산자 책임이 없는 외부적·내부적 상황 및 그 외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의 경우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감면  
라. 재정지원의 대상(안 제8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함께 활용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설치  
사업과 함께 개선사업도 지원하며, 각 시설의 운영사업 지원도 포함  
마.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안 제9조)

- 1)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보고 및 검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 2) 재정지원 등 지원 업무 및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기성물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잔재물을 말한다.

제3조(민간의무생산자)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환경부 장관이 민간의무생산자로 지정·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돼지 사육두수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2만두 이상인 사업자
2.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

영하는 사업자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1천톤 이상인 사업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민간의무생산자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매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생산목표율)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이란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을 반영하고,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목표율(이하 “생산목표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별표 1에 따른 장기 생산목표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과징금의 감면)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운영할 수 없었던 경우
2. 시설 개선, 보수 또는 불가피한 장애 등으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운영할 수 없었던 경우

3. 그 밖에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 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만큼 감면
2.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면제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감면
4.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감면

제7조(과징금의 부과 절차)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 납부기한 및 방법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2. 바이오가스 활용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시설 운영사업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무생산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
2.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4.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2.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 장기 생산목표율(제4조제1항 관련)

1.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

가. 2025년: 50%

나. 2030년: 50%

다. 2035년: 60%

라. 2040년: 70%

마. 2045년: 80%

바. 2050년: 80%

2. 민간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

가. 2026년: 10%

나. 2030년: 10%

다. 2035년: 50%

라. 2040년: 60%

마. 2045년: 70%

바. 2050년: 80%

**과징금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 관련)

$$\text{과징금(원)} = \text{목표미달성분} \times \text{미달성 연도의 도시가스 평균요금} \times \text{바이오가스 발열량}$$

비고

1. 목표미달성분( $\text{Nm}^3$ ) =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량 - 달성량
2. 미달성 연도의 도시가스 평균요금(원/MJ)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를 기준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의 평균값
3. 바이오가스 발열량( $\text{MJ}/\text{Nm}^3$ ) =  $23.9 \text{ MJ}/\text{Nm}^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9항을 위반하여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30	70	100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30	70	100
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50	80	100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30	70	100
마.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50	80	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활하수과	
연 락 처	(044) 201 - 7027